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부동산등기법 59p (9) ①	개념, 공식-설명	<p>(9) 주민등록번호 등의 보호조치</p> <p>① 열람업무담당자는 열람신청인에게 열람대상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열람대상정보에 다음의 정보가 포함된 때에는 이를 가리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열람신청의 경우 ⑦의 정보는 열람신청인이 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거나 재판상 목적 등으로 모두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소명한 경우에는 가리지 않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p> <p>1.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p> <p>2. 개인의 전화번호</p> <p>3. 금융정보(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수표번호 등)</p>	<p>(9) 주민등록번호 등의 보호조치</p> <p>① 열람업무담당자는 열람신청인에게 열람대상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열람대상정보에 다음의 정보가 포함된 때에는 이를 가리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열람신청의 경우 제1호의 정보는 열람신청인이 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거나 재판상 목적 등으로 모두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소명한 경우에는 가리지 않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p> <p>1.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p> <p>2. 개인의 전화번호</p> <p>3. 금융정보(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수표번호 등)</p>
		수정 사유	오타
부동산등기법 134~134p ⑥	오타	<p>⑥ 신분증 외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신분증의 사본(다만 신분증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④의 신분확인서)과 함께 조서에 첨부하고, 그 정보의 종류를 [본인확인정보]란에 추가 기재한다.</p>	<p>⑥ 신분증 외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신분증의 사본(다만 신분증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⑥의 신분확인서)과 함께 조서에 첨부하고, 그 정보의 종류를 [본인확인정보]란에 추가 기재한다.</p>
		수정 사유	오타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